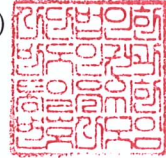


직무이행명령등촉구서

수신 : 국토교통부장관

발신 :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단체등록번호)



상임대표 김태훈

0663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52길 25, 202호(서초동, 메종스튜디오빌)

전화 02-599-4434

팩스 02-599-4435

전자우편 hanbyun@hanbyun.or.kr

촉 구 취 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인 광화문광장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천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 기한을 정한 시정명령 내지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하고, 서울특별시장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대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 광화문광장의 무단점거 현황

서울특별시 종로구 1-68 소재 광화문광장은 국유재산으로서 국토교통부가 관리청이 되고, 국토교통부는 관리·운영 사무를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세월호 희생자들의 유족 등은, 2014. 7. 14., 세월호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위 광화문광장에 천막 등 3개동을 설치하였고, 같은 달 중순 서울특별시 내지 서울특별시시장의 지원으로 천막 등 11개동을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아래 [사진1] 참조).

[사진1]



2. 위법사실 등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 2016.1.7.] [서울특별시조례 제6120호, 2016.1.7., 일부개정], 이하 ‘광화문광장조례’)상 광화문광장의 설치목적 및 사용허가조건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이라 할 것인데,

우선 유족 등이 설치한 천막의 경우, 광화문광장조례에 따른 사용허가를 득한 바가 없어 이는 국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라 할 것이고, 이에 서울특별시장은 광화문광장조례 제15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 2015.12.23.]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 이하 ‘공유재산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사료되나, 변상금 부과 이후에도 광화문광장의 무단점유 상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유재산법 제7조, 제82조는 국유재산의 무단사용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광화문광장조례가 준용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제99조 역시 마찬가지로 규율하고 있으며,

공유재산법 제7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장은 광화문광장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시설물들을 철거함으로써, 국유재산인 광화문광장이 정당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광화문광조례에 따라 서울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광화문광장에 천막 등이 설치된 2014. 7. 14. 이래 2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서울특별시장은 광화문광장 무단 점유 및 시설물설치를 방관하였고, 나아가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추가 천막을 설치하여 지원함으로써 위법에 앞장섰습니다.

3. 시정명령, 직무이행명령 및 후속조치의 필요성

이상에서 살펴본 서울특별시장의 행태는, 위임된 사무와 관련하여 그 처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적극적인 천막 지원 설치)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주무부장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의 처분행위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것,

또는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국유재산인 광화문광장을 무단점거하고 있는 설치물들을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도록 명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만일 위 정한 기간 내에도 서울특별시장이 철거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동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